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근로자시니어안전관리자 채용 재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간제근로자(시니어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능력 있고 성실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내용

채용분야	채용형태 (기간)	근무시간	직무 분류	채용예정인원 (지역별)
시니어 안전관리자	기간제 (12개월)	주 20시간	○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화공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1명 (경기도 고양)

2. 지원 자격

지원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임용지에서 '21.4.1.(목)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60세 이상 자*(1961.12.31. 이전 출생자) * 우리원 설립목적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자로 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①~③ 중 하나를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산업안전수준진단, 위험성평가 등)을 보유한 자 「안전관리자의 자격」
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3. 근무 조건

채용분야	구분	내용
시니어 안전관리자	근무기간	○ '21.4.1.~'22.3.31.(12개월)
	근무시간	○ 주20시간, 근무 요일 입사 후 별도 협의
	임금	○ 1,700,000원(세전 월급), 선택형복지비 별도 지급
	근무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 우리원 지역본부 등으로 출장 업무 병행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 규정에 따름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1.2.10.(수) ~ '21.2.21.(일) 24: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kordi.wiselection.com>)

※ 접수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원서 접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채용 홈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 ○ 응시원서의 경력, 자격증, 교육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모두 서면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 제출 ※ 기재사항 서면증빙 불가능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서류심사 합격 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한 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 경력(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증명원) ○ 자격 : 자격증 사본 ○ 교육 : 관련 증빙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 가산점 증빙 <table border="1" data-bbox="453 898 1385 136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증빙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td> <td>·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td> </tr> <tr> <td>장애인</td> <td>· 장애인증명서</td> </tr> <tr> <td>저소득층</td> <td>· 수급자증명서</td> </tr> <tr> <td>저소득층</td> <td>· 한부모가족증명서</td> </tr> <tr> <td>다문화 가족</td> <td>· 국적취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td> </tr> <tr> <td>북한이탈주민</td> <td>·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td> </tr> <tr> <td>비수도권 지역인재</td> <td>· 졸업증명서(대학이하 최종학력 기준)</td> </tr> <tr> <td>한국사능력검정시험</td> <td>·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면접 당일 현장 제출, 제출 자료는 사실 관계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p>	구분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 가족	· 국적취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비수도권 지역인재	· 졸업증명서(대학이하 최종학력 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구분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 가족	· 국적취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비수도권 지역인재	· 졸업증명서(대학이하 최종학력 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최종 합격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전자파일, 기타 필요 서류 																		

6. 심사방법 및 일정

심사(일자)	내용
1차 서류심사 ~2.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 합격자 발표 2.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2차 면접심사 ~3.1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다대일 면접 진행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11명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최종 합격자 발표 3.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7. 가산점 ※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대 상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좌동	좌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범위	좌동	좌동	○ 「장애인 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최초 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2%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	최초 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2% 이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최초 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2% 이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거주지 편입 3년 이상인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초 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2% 이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권장정책에 따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의 경우, 최초 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2% 이내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함

8. 유의 사항

- 각 심사 진행 시 성별, 학교명, 가족사항 등이 인지 혹은 유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예비합격자) 점수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 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합니다.
- (면접심사 예비합격자) 면접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부여(최종합격인원의 2배수)하고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입사를 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또는 합격이 취소될 경우 순위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증빙서류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 최종 응시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는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할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을 경우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 불합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내용은 유선(☎ 031-8035-7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10.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첨부 1> 인정 자격증

<시니어안전관리자 인정 자격증 목록>

분류	자격증
화학공학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가스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일반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인간공학기술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방재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소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구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첨부 2 > 인정 교육 분야

구분	인정 교육 분야	
시니어 안전관리자	산업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전기자기학
	건축설비학	제어계측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시스템안전공학

< 첨부 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채용 직무기술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채용 직무기술서	시니어 안전관리
---------------------------	---------------------

채용 분야	시니어 안전관리자	분류 체계	대분류	23. 환경·에너지·안전	
			중분류	06. 산업안전	
			소분류	01. 산업안전관리	
			세분류	01. 기계안전관리	02. 전기안전관리
				03. 건설안전관리	04. 화공안전관리
				05. 가스안전관리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 노인 및 노인일자리 종사자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 				
직무 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안전관리) 기계설비로 인한 재해 분석을 통하여 기계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한 기술 전반을 이해함으로써,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사용 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업무 ○ (전기안전관리) 전기재해방지에 대한 기반기술을 이해하고, 전기 에너지로 인한 전기 재해의 위험성을 분석·도출하여, 전기 사고, 감전 재해, 전기 화재·폭발, 정전기 장·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 ○ (건설안전관리) 건설재해 분석을 통하여 건설물의 시공 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건설 재해방지에 대한 기반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업무 ○ (화공안전관리)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화재·폭발 사고로부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위험 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대한 기반기술을 이해하고 적용·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업무 ○ (가스안전관리)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의 사용, 가스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과 유지관리 등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회사에서 정하는 안전방침, 무재해 운동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식, 안전보건과 연관된 외부 정보에 대한 지식,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운용에 대한 지식 ○ (전기안전관리) 설계도면 관련 지식, 전기설비 명세서(specification) 및 시험성적서, 전기안전관련 법령, 정격차단용량(kA) 관련 지식 ○ (건설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작업공정에 적합한 점검 방법, 산재처리 과정 및 체계에 대한 지식, 건설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평가 내용에 대한 지식, 건설현장 내 작업공정, 작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화공안전관리) 화재폭발 발생에 관련한 점화원 종류 및 분류 기준에 대한 지식, 물질 취급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화재폭발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과 대피훈련에 대한 지식 ○ (가스안전관리) 가스 관련 법령 및 그 체계에 대한 지식, 안전관리규정 구성 요소 				

	<p>및 내용특성 이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 연소, 화재, 폭발, 폭굉 현상, 화재 전파, 소화에 대한 지식</p>
<p>필요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서 작성 능력, 사고분석 기법 등의 원인 분석 능력, 산업재해 분류와 통계분석 등의 활용 능력, 재해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능력 ○ (전기안전관리) 전기도면 이해능력, 계측기 사용 능력, 계측결과 분석 능력, 전기 설비 적정성 검토능력 ○ (건설안전관리) 설계도서 검토 능력, 공정흐름에 따른 위험요소 인지 능력, 작업 공정에 맞는 장비사용에 대한 위험요소 인지 능력, 재해 판별 및 분석 기술 관련 법령, 기준·지침에 따른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화공안전관리) 화재 폭발 점화원 특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화재폭발 특성에 따른 소화기 선정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긴급피난시설 운영 및 조치할 수 있는 능력 ○ (가스안전관리) 안전관리방침에 따른 목표 수립 능력,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방향설정 능력, 관계자/관계기관과 커뮤니케이션·협업
<p>직무 수행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안전관리) 각종 법령과 가이드를 조사하고 분석하려는 태도, 법적 범위와 회사의 규정을 조사하고 사업장에 맞게 적용하려는 합리적인 태도, 타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협력적 태도 ○ (전기안전관리) 과학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 세심하고 주의 깊은 관찰력 ○ (건설안전관리) 안전기준 준수 의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의지, 사고 예방 의지, 재해처리 절차서 및 공정 준수 위험요인 확인 시 필요한 준비 노력,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 ○ (화공안전관리) 화학물질 위험에 대해 대비하려는 노력, 화학물질 관련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의식 ○ (가스안전관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하려는 자세, 안전관리 규정 수립을 위한 법령에 대한 분석적 사고, 가스사고 통계를 활용한 분석적 사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
<p>직업 기초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기술능력, 자기개발능력
<p>참고 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ncs.go.kr

< 첨부 4 >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의신청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의신청서

모집분야	시니어안전관리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채용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제척·기피·회피 대상 위원의 심사 참여, 면접 시 부당한 대우 등) 작성바랍니다
- *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채용과 무관한 단순 문의 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제출처 : kordi@kordi.or.kr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5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